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강사 운영 및 심의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이하 '본부')의 강사 운영, 관리 및 위촉심의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강사위촉심의위원회)

본부 강사의 자격을 심의하고 위촉하기 위해 강사위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하되, 사무국에서 후보군을 추천하여 비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아버지학교 수료와 무관)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사무국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신규강사선발 및 위촉 심의
 2. 기존강사 및 해촉강사 재위촉 심의
 3. 강사 해촉 심의
 4. 본부 및 스태프가 추천된 자한 신규강사선발 응시 자격 심의
 5. 예비강사 과정을 이수한 자의 신규강사선발 응시 자격 심의
 6. 기존강사 재위촉 및 신규강사 위촉을 위한 위원회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가 종료되면 별도의 알림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3조(강사 운영)

- ① 강의 의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부는 아버지학교 강사 위촉을 받은 강사에게 강의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부는 강사에게 강의의뢰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수락 여부를 회신 받아 진행자에게 통지한다.
 3. 강의 의뢰는 본부 담당자가 강사에게 직접 하며, 지부 혹은 개설 단체가 강사에게 개별로 강의 의뢰할 수 없다.
- ② 강사 배정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부는 강사 배정을 주관하며, 아버지학교 주차별 주제(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 중 2회는 지부 추천 강사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본부가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부는 본부에 강사를 추천할 시 진행자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강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3. '아버지와 가정' 수료식 강의는 위촉 강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개설 장소와 상황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
 4. 본부는 특수사역에 강사를 배정할 시 각 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
 5. 본부는 신규 강사에게 강사위촉 기간(3년) 내 최소 3회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강사 및 강의 주제 변경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강사 변경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강사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할 수 없을 때, 즉시 본부에 알리고, 본부는 즉시 지부와

협의하여 강사를 재배정한다.

나. 강사는 본인에게 배정된 강의를 타 강사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본부나 지부는 확정된 강사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이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다.

2. 강의 주제 변경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기존강사의 강의주제 변경은 강의안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나. 신규강사는 위촉기간내(3년)에 강의 주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을 원할 경우 신규강사 선발과정에 준하여 재위촉 받아야 한다.

④ 해외 강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현지에서 아버지학교 강사를 위촉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부 재정지원으로 강사를 파송하는 경우, 전년도 강의실적과 평가가 상위권인 강사 중 현지 요건에 적합한 강사를 배정하되, 해외 파송 실적을 파악하여 최근 해외 강의 실적이 적은 자를 우선 배정하여 배정을 균등하게 한다.

3. 현지 재정지원으로 강사를 파송하는 경우는 현지 추천 강사를 우선 배정하며, 추천한 강사가 개인 일정 등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본부에서 현지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⑤ 강사료는 비전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본부나 지부 및 개설 주체에서 임의로 강사료를 조정할 수 없다. 단, 외부기관의 강의 요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강사 교육)

① 본부는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 스쿨 및 강사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② 강사 스쿨은 아버지학교 위촉 강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본부의 지침 안내와 일반적인 강의 코칭 교육이며, 연 2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강사 아카데미는 아버지학교 주차별 주제 관련 강의 코칭을 위한 교육이며 위촉 강사 개인의 역량별로 과정을 나누어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설한다.

④ 강사는 위촉 기간 이내(3년)에 본부에서 개설하는 강사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제5조(강사 해촉)

① 본부는 강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강사 해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된 내용을 본부에 통지하여 처리한다.

1. 아버지학교의 설립목적과 방침에 위배되는 내용을 한 강의

2. 아버지학교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결강하거나 강의 시간에 늦는 경우

4. 본부의 승인 없이 강의를 양도·양수한 경우

5. 기타 본부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에서 해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하여 해촉을 의결한 경우 즉시 본부에 통지하고, 본부는 그 사실을 해당 강사에게 통지한다.

③ 해촉된 강사는 해촉 날로부터 1년간 아버지학교 강사로 재위촉 될 수 없다.

④ 해촉된 강사의 재위촉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신규 강사 아카데미를 이수자를 본부에서 재위촉 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 (신규 강사)

① 신규 강사로 활동하기 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목회자 및 평신도 신규 강사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목회자는 아버지학교 수료 후 1년 이상 된 자로서 진행 1회 혹은 조장으로 2회 이상 봉사한 경험이 있는 자

나. 평신도는 아버지학교 수료 후 2년 이상 된 자로서 조장, 관리팀으로 5회 이상 봉사하고, 팀장 경험이 있으며, 진행자로 2회 이상 봉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위 1 호에 해당하는 자로 아버지학교의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로서 본부의 추천 양식에 의해 지부리더십의 추천을 받은 자

3. 위 1호, 2호의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본부 및 스태프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

4. 강사선발 자격 조건과 무관하게 예비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위원회로부터 강사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된 자

5. 아버지학교에 재정후원은 강사의 필수요건으로 강사는 아버지학교에 후원해야 한다.

② 신규 강사 선발 전형은 다음과 같다.

1. 본부는 신규 강사 선발 관련 상세 내용을 1차 전형 3개월 전에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2. 아버지학교 신규 강사 위촉 심의는 1차 전형(서류심사), 2차 전형(면접 및 시범 강의), 3차 전형(신규 강사 아카데미 이수)으로 이루어진다.

3. 위 제5조 ①항의 조건에 부합하고 신규 강사 자격을 갖추려는 자는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규 강사선발 상세 내용을 참고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 기한 내에 본부로 제출한다. 단, 우편 접수 시는 제출 기한 내에 도착시켜야 한다.

4. 본부는 기한 내에 접수된 1차 전형 서류를 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는 서류를 심사하여 1차 전형 합격 여부를 본부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본부 담당자는 1차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5. 위원회는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전형을 시행한다.

6. 본부는 2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 전형 신규 강사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③ 본부는 신규 강사 위촉 대상자에게 다음 해 초에 아버지학교 강사 위촉장을 교부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 (기존 강사 재위촉)

① 기존강사는 재위촉을 받기위해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최근 3년 안에 토요일아버지학교 진행, 혹은 조장으로 1회 이상 활동한 자

2. 최근 3년 안에 본부에서 개설하는 강사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한 자

3. 아버지학교에 재정후원을 하고 있는 자

② 강사 재위촉 전형은 다음과 같다.

1. 본부는 기존 강사 중 재위촉 대상자를 위원회에 전달한다.

2. 위원회는 재위촉 대상자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본부에 전달한다.

3. 본부는 위원회 결과에 따라 강사 재위촉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린다.

③ 본부는 강사 재위촉자에게 다음해 초에 강사 위촉장을 교부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보칙

제1조(경과 규정) 본 규정을 제정함으로 기존 “강사위촉심의위원회 규정” 과 “강사 교육 및 강의 배정 지침” 은 폐기한다.

제2조(규정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의 발의와 비전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규정제정 및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첨. 강의평가서

강 의 평 가 서

일 시 : 년 월 일

기 관 : _____

강 사 : _____

대 상 : (참석 00명)

주 제 :

번호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 가
1	평가자	5- 4- 3- 2- 1	1-1.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었다.
		5- 4- 3- 2- 1	1-2.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강의내용	5- 4- 3- 2- 1	2-1. 강의 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다.
		5- 4- 3- 2- 1	2-2. 강의내용은 주제에 맞고, 잘 준비되었다.
		5- 4- 3- 2- 1	2-3. 강의내용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5- 4- 3- 2- 1	2-4. 강의에 사용된 자료(예화, 사진, 영상등)는 적절하였다.
		5- 4- 3- 2- 1	2-5. 전반적으로 본 강의에 대해 만족한다.
3	강사	5- 4- 3- 2- 1	3-1. 강사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다.
		5- 4- 3- 2- 1	3-2. 강사는 이해하기 쉽고, 듣기 편하게 강의하고 있다.
		5- 4- 3- 2- 1	3-3. 강사의 강의 방법(강의법, 질문, 기자재 활용, 음색, 목소리 톤 등)은 학습에 도움이 되고 있다.

5-매우 좋다 4- 좋다 3- 보통 2-그저 그렇다 1-안 좋다

강의에 대한 전체적 소감과 느낌, 고칠 점등을 적어주세요.